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
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51호
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
대두되고, 이상동기 범죄(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동기 없기
발생하는 범죄)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
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

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·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